

대전지방법원 2022. 8. 30 선고 2022가단115966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광

담당변호사 권두영, 권경열

피 고 B중중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8. 3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1995. 3. 25. 접수 제46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1)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무변론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 이수환

[별지]

목 록

1. 세종특별자치시 임야 44873㎡
2. 세종특별자치시 임야 1861㎡ - 이상 -

청 구 원 인

1. 당사자 관계

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 C [] 임야 44873㎡(이하 '이 사건 1 토지' 라고만 합니다) 및 위 D [] 임야 1861㎡(이하 '이 사건 2 토지' 라고만 합니다)의 분할 전 토지인 연기군 C [] 임야 46711㎡(이하 '이 사건 모토지' 라고만 합니다)의 소유자 중 1인인 소외 E [] 을 상속한 자이고,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입니다.

2.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

원고의 선대 E [] 과 F [] , G [] 은 1971. 4. 7.경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[갑 제1호증 (C [])의 매매등기부등본 참조], 피고는 이 사건 모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1995. 3. 25.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(이하 '특조법' 이라고만 합니다)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[갑 제2호증의 1, 2 각 (C [] , D [] 의) 등기부등본 참조].

3. 이 사건 각 토지의 연혁

세종특별자치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후 2022. 1. 6. C 임야 44873㎡(이 사건 1 토지)와 H 임야 1838㎡로 각 분할되었고, 같은 날 위 H 임야는 D 임야 1861㎡(이 사건 2 토지)로 등록전환되었습니다[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각 {C, H, D}의 토지대장 참조].

4.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

가.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지분에 관하여

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선대 E 과 F, G 이 공동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, 위 E, F, G 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1/3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 것인 [원고의 선대 E 은 1989. 6. 20. 사망하여 그의 처 I, 자 J, K, L, 원고, M, N, O 이 공동상속하였으므로 [갑 제4호증 {E}의 제적등본 참조], 결국 위 F 과 G, 망 E 의 상속인들은 [별지 1.] 소유지분표 최종소유지분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.

나. 공유물보존행위

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명의자 중 1인인 E의 상속인 중 1인인바,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 중 1인으로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위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일환으로 피고를 상대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합니다.

5. 결 어

요컨대, 원고의 선대 E와 F, G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이고, 원고는 위 E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 중 1인이라고 할 것인바, 원고는 공유자 중 1인으로 공유물 보존행위를 위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일환으로 피고의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[별지 1.]

소유지분표

소유자명			최종소유지분
			1/3
			1/3
- 1989. 6. 20. 사망	처	(상속지분 1.5)	3/51
	자	(상속지분 1)	2/51
	자	(상속지분 1)	2/51
	자	(상속지분 1)	2/51
	자	원 고 (상속지분 1)	2/51
	자	(상속지분 1)	2/51
	자	(상속지분 1)	2/51
	자	(상속지분 1)	2/51

1)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
마쳐져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
있으므로(대법원 2015. 4. 9. 선고 2012다2408 판결 등 참조), 원고의 청구취지 중 ‘별지1.
소유지분표 최종 소유지분란 기재와 같이’ 부분은 불필요한 기재라고 보인다.